



화물차 상부 에서 떨어짐



재해개요

| 발생형태 | 부상 정도 | 연령 | 동종경력 |
|------|-------|-----|------|
| 떨어짐 | 사망 1명 | 54세 | |



'22. 2. 00.(월) 15:00경 경기도 소재 화물차 개조 현장에서 화물차 상부에서 서서 옷에 붙어있는 분진 등을 압축공기로 제거하던 중 약 2.7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

작업상황 - 불안정한 행동

| 정상 | 비정상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조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|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및 개인보호구 미착용 |

발생원인

- ▶ **직접원인** **안전조치**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대 착용 등의 안전조치 미준수
- ▶ **기여요인** **관리감독**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한 작업수행 관리감독 미실시
- 위험요인**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위험요인 통제하기 위한 대책 미수립

예방대책

- ▶ **추락방지조치 실시**
 - 추락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후 작업수행
 -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
- ▶ **개인 보호구 지급·착용 철저**
 -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수행시 안전모 및 안전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보호구의 착용여부를 관리감독 하여야 함

* 본 O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